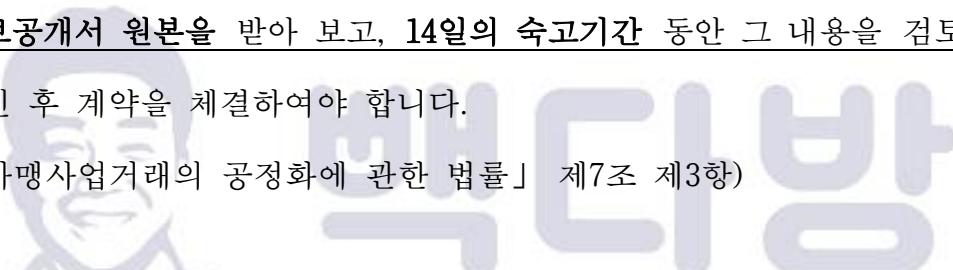


<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서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가맹계약을 체결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본 서류가 아닌 정보공개서 원본을 받아 보고, 14일의 숙고기간 동안 그 내용을 검토해 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비공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장



빽다방

<http://www.theborn.co.kr>

ID: webmaster@theborn.co.kr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20090100502

정보공개서 최초등록일: 2009년 10월 30일

정보공개서 최종등록일: 2025-11-21

가맹희망자가 운영하게 될 [빽다방]

정보공개서

(주)더본코리아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년 월 일

(주)더본코리아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 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 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주소: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1길 39(5~6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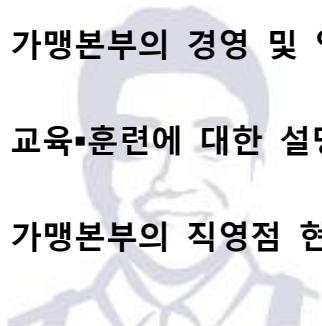
전화: 02) 549-3864

Fax: 02) 511-3864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더본코리아 프랜차이즈사업본부, 02)549-3864

목 차

-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빽다방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 (<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 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정보마당 - 교육자료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법령 및 제도 - 법령자료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 받으시고, 필요할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될 경우 변경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 일반정보는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상호	사용 브랜드	주 소			
(주)더본 코리아	빽다방 외 24개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1길 39(5~6층)			
	법인 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 전화	대표 팩스
	1994.1.12	1994.1.21	백종원	02)549-3864	02)511-3864
	법인 등록번호	110111-1002122	사업자 등록번호	211-86-00870	

2. 특수관계인의 일반정보

당사의 특수관계인 중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 경영 경험이 있는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상호/이	사용브랜드	주소		
사용인 (임원)	백종원	빽다방 외 24개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1길 39(5~6층)		
			대표자	대표 전화	대표 팩스
			백종원	02)549-3864	02)511-3864
관계	상호/이름	사용브랜드	주소		
사용인 (임원)	최경선	빽다방 외 24개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1길 39(5~6층)		
			대표자	대표 전화	대표 팩스
			백종원	02)549-3864	02)511-3864
관계	상호/이름	사용브랜드	주소		
사용인 (임원)	강석천	빽다방 외 24개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1길 39(5~6층)		
			대표자	대표 전화	대표 팩스
			백종원	02)549-3864	02)511-3864
관계	상호/이름	사용브랜드	주소		
사용인 (임원)	윤동춘	빽다방 외 24개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1길 39(5~6층)		
			대표자	대표 전화	대표 팩스
			백종원	02)549-3864	02)511-3864
관계	상호/이름	사용브랜드	주소		
사용인 (임원)	김해수	빽다방 외 24개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1길 39(5~6층)		
			대표자	대표 전화	대표 팩스
			백종원	02)549-3864	02)511-3864
관계	상호/이름	사용브랜드	주소		
사용인 (임원)	최원길	빽다방 외 24개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1길 39(5~6층)		
			대표자	대표 전화	대표 팩스
			백종원	02)549-3864	02)511-3864
관계	상호/이름	사용브랜드	주소		
사용인 (임원)	강석원	빽다방 외 24개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1길 39(5~6층)		
			대표자	대표 전화	대표 팩스
			백종원	02)549-3864	02)511-3864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최근 3년)

당사는 바로 전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합병(가른 기업의 가맹 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있습니다.

인수/합병 여부	기업명	브랜드	인수/합병일	주소	대표자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을 인수함	해당없음	-	-	-	-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의 가맹사업 일부를 인수함	해당없음	-	-	-	-
다른 기업에 가맹사업 일부를 인도함	해당없음	-	-	-	-
다른 기업이 가맹본부를 합병함	해당없음	-	-	-	-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분	내용	추가설명
명칭	빽다방	
상호	빽다방 ()점	
	빽다방	서비스표 등록번호: 제 40-1390837호
상표 (서비스표)	빽다방	서비스표 등록번호: 제 40-1900444호
	PAIK'S COFFEE	서비스표 등록번호 제 40-1900445호
그 밖의 영 업표지 (BI)	빽다방	

※ 당사의 상표, 간판, 마크, 로고 등에 대한 변경은 가맹점사업자와 사전협의 없이 변동 될수 있으며, 이로 인한 영업표지 등의 변경 시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와 상호협의 하여 비용의 분담비율을 결정하고, 가맹자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의를 제기 하지 않고 제반 조치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5.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1)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2년	162,412,047	62,390,792	100,021,254	263,286,183	23,337,874	14,260,047
2023년	193,594,164	68,377,331	125,216,832	388,087,962	23,924,281	19,325,524
2024년	337,953,047	79,781,486	258,171,560	441,853,061	34,614,914	30,182,166

※ 당사는 2020년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근거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근거자료는 <별첨4-1>, <별첨4-2>와 같습니다.

2)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이름	현직위	사업경력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관련 임원	백종원	대표이사	1994.1~현재	(주)더본코리아 대표이사	회사업무 총괄
			2005.3~현재	청도더본식품유한공사 대표이사	
			2007.10~현재	청도더본찬인관리유한공사 대표이사	
			2007.9~2013.7	(주)맛기신정 대표이사	
			2007.4~2013.7	(주)푸드패밀리0410 대표이사	
			2008.1~2009.1	(주)맛짱푸드 대표이사	
			2008.1~2013.1	(주)맛기정 대표이사	
가맹사업 관련 임원	최경선	부사장	2025.1~현재	(주)더본코리아 부사장	가맹사업 부 총괄
			2021.6~2024.12	(주)더본코리아 가맹사업부 본부장	
	강석천	전무이사	2021.6~현재	(주)더본코리아의 재경본부 본부장	재경본부 총괄
	윤동춘	감사위원	2024.4~현재	(주)더본코리아 감사위원장	감사 총괄
	김해수	감사위원	2024.4~현재	(주)더본코리아 감사위원	감사 총괄
	최원길	감사위원	2024.4~현재	(주)더본코리아 감사위원	감사 총괄
가맹사업	강석원	사장	2025.6~현재	(주)더본코리아 사장	경영자문

비관련 임원					
-----------	--	--	--	--	--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2024년 12월 31일	4	3	359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가맹사업을 경영하였거나 경영하고 있습니다.

관계	상호/이름	구분	기간	사업내용
가맹본부	(주)더본코리아	가맹사업 경영	2008.08 ~현재	새마을식당(등록번호:20080100208)이라는 브랜드의 한식사업 경영
			2008.08 ~현재	본가(등록번호:20080100209)라는 브랜드의 한식사업 경영
			2008.08 ~현재	백종원의원조쌈밥집(등록번호:20080100207)이라는 브랜드의 한식사업 경영
			2008.08 ~현재	홍콩반점0410(등록번호:20080100210)이라는 브랜드의 종식사업 경영 2013.8 (주)더본코리아로 사업이관
			2009.10 ~현재	한신포차(등록번호:20090100498)이라는 브랜드의 한식사업 경영
			2009.10 ~현재	빽다방(등록번호:20090100502)이라는 브랜드의 커피판매 사업 경영 2013.8~현재 (주)더본코리아로 사업이관
			2009.10 ~현재	미정국수0410(등록번호:20090100499)이라는 브랜드의 분식사업 경영 2013.8~현재 (주)더본코리아로 사업이관
			2010.7 ~현재	성성식당(등록번호:20100100344)이라는 브랜드의 한식사업 경영
			2012.07 ~현재	역전우동0410(등록번호:20120100352)이라는 브랜드의 분식사업 경영 2013.8~현재 (주)더본코리아로 사업이관
			2013.10 ~2023.02 *정보공개서 자진취소	대한국밥(등록 번호:20130287)이라는 브랜드의 한식사업 경영
			2014.06 ~현재	돌배기집(등록 번호:20140495)이라는 브랜드의 한식사업 경영

2015.05 ~현재	백스비어(등록번호:20150426)이라는 브랜드의 주점사업 경영
2015.05 ~현재	백칠판0410(등록번호:20150417)이라는 브랜드의 한식사업 경영
2017.04 ~2023.02 *정보공개서 자진취소	원키친(등록번호: 20170536)이라는 브랜드의 기타외식사업 경영
2018.03 ~현재	리춘시장(등록번호: 20180318)이라는 브랜드의 중식사업 경영
2018.04 ~현재	고속우동(등록번호: 20180402)이라는 브랜드의 분식사업 경영
2019.04 ~현재	롤링파스타(등록번호: 20190227)이라는 브랜드의 서양식사업 경영
2019.04 ~현재	인생설렁탕(등록번호: 20190275)라는 브랜드의 한식사업 경영
2019.12 ~현재	빽다방빵연구소(등록번호: 20191285)라는 브랜드의 제과점 사업 경영
2020.07 ~현재	막이오름(등록번호: 20200879)라는 브랜드의 전통주점 사업 경영
2021.05 ~현재	제순식당(등록번호: 20211209)라는 브랜드의 한식사업 경영
2021.08 ~현재	연돈튀김덮밥(등록번호: 20211998)라는 브랜드의 분식사업 경영 2025.08~ 영업표지 변경(기준 : 연돈불카츠)
2021.11 ~현재	빽보이피자(등록번호: 20215019)라는 브랜드의 피자사업 경영
2022. 03 ~현재	퀵반(등록번호: 20220256)라는 브랜드의 한식사업 경영
2022.04 ~현재	고투웍(등록번호: 20220341)라는 브랜드의 중식사업 경영
2022.12 ~현재	홍콩분식(등록번호: 20221361)라는 브랜드의 분식사업 경영
2023.01 ~현재	낙원곱창(등록번호: 20230087))라는 브랜드의 한식사업 경영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존속기간 만료일 (가맹사업부의 이용기간)

백다방 (상표권)	백다방 가맹점 영업 과 관련된 일체 의 권리	등록 2018-08-27	등록 제40-1390837 호	(주)더본코리아	2028.08.27
		등록 2022-08-18	등록 제40-1900444 호	(주)더본코리아	2032.08.18
		등록 2022-08-18	등록 제40-1900445 호	(주)더본코리아	2032.08.18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권)를 사용한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귀하가 사용할 수 있는 당사의 상표(특허) 범위는 해당 점포 소재지에 한해서만 허용 됩니다.



백다방

II. 가맹본부의 [빽다방] 가맹사업 현황

1. [빽다방]을 최초가맹점영업이 시작한날: 2009년 9월7일

직영점을 시작한날: 2006년 6월 24일

2. [빽다방]연혁

가맹본부상호	영업표지	대표자 이름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주)더본코리아	빽다방	백종원	2013.08~2014.03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492번지, 14층
(주)더본코리아	빽다방	백종원	2014.04~2024.03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1길 39(5~6층)
(주)더본코리아	빽다방	백종원,강석원	2024.04~2025.06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1길 39(5~6층)
(주)더본코리아	빽다방	백종원	2025.06~현재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1길 39(5~6층)

3. [빽다방] 업종

영업표지	업종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커피와 기타음료
빽다방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커피	커피와 기타음료

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빽다방]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지역	2022.12.31			2023.12.31			2024.12.31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1231	1228	3	1452	1449	3	1715	1712	3
서울	255	254	1	299	298	1	360	359	1
부산	23	23	-	30	30	-	34	34	-
대구	54	54	-	66	66	-	79	79	-
인천	105	105	-	125	125	-	143	143	-
광주	21	21	-	22	22	-	23	23	-
대전	76	76	-	97	97	-	112	112	-
울산	10	10	-	10	10	-	10	10	-
세종	16	16	-	20	20	-	27	27	-
경기	334	334	-	369	369	-	440	440	-
강원	34	34	-	43	43	-	51	51	-
충북	37	37	-	43	43	-	50	50	-
충남	68	68	-	82	82	-	93	93	-

전북	52	52	-	68	68	-	88	88	-
전남	47	47	-	56	56	-	61	61	-
경북	36	36	-	39	39	-	44	44	-
경남	35	35	-	46	46	-	52	52	-
제주	28	26	2	37	35	2	48	46	2

5. 바로 전 3년간 [빽다방] 가맹점 수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개점	계약종료	계약해지	명의변경	연말
2022	971	278	0	21	90	1228
2023	1228	241	0	20	108	1449
2024	1449	286	0	23	149	1712

*계약종료: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종료하는 경우를 뜻함

*계약해지: 가맹점사업자의 임대차계약 만료 등의 특수한 사항으로 발생되어 본부와 합의를 거쳐 계약을 중도에 종료하는 경우

*명의변경: 가맹점 운영권을 양도한 경우

6. [빽다방]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당사는 [빽다방]외에도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고 있는 가맹사업의 바로 전 3년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개)

구분	상호 / 이름	영업표지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업종	가맹점/직영점의수		
					2022.12.31	2023.12.31	2024.12.31
가맹본부	(주)더본코리아	백종원의원조 쌈밥집	20080100207	한식	16/0	14/0	14/0
		새마을식당	20080100208	한식	109/2	101/0	92/0
		본가	20080100209	한식	25/1	18/1	16/1
		홍콩반점0410	20080100210	중식	278/1	282/0	293/0
		한신포차	20090100498	한식	129/1	116/0	124/0
		미정국수0410	20090100499	분식	27/0	19/0	17/0
		빽다방	20090100502	커피	1,228/3	1,449/3	1,712/3

		성성식당	20100100344	한식	11/0	2/0	1/0
		역전우동0410	20120100352	분식	166/1	192/1	218/1
		대한국밥	20130287 (23.2. 자진취소)	한식	1/0	1/0	1/0
		돌배기집	20140495	한식	23/0	17/0	9/0
		백칠판0410	20150417	한식	5/0	3/0	0/0
		백스비어	20150426	주점	87/0	79/0	69/0
		원키친	20170536 (23.2. 자진취소)	기타 외식	1/0	0/0	0/0
		리춘시장	20180318	중식	33/1	19/1	13/1
		롤링파스타	20190227	서양 식	120/0	126/0	130/0
		인생설렁탕	20190275	한식	32/0	27/0	25/0
		빽다방빵연구소	20191285	제과 제빵	11/2	15/3	18/4
		막이오름	20200879	주점	32/1	29/0	21/0
		제순식당	20211209	한식	2/0	11/0	14/0
		연돈튀김덮밥	20211998	분식	68/1	49/1	31/2
		빽보이피자	20215019	피자	97/2	202/1	243/1
		퀵반	20220256	한식	1/1	0/0	0/0
		고투웍	20220341	중식	1/1	7/0	1/0
		홍콩분식	20221361	분식	0/0	8/0	5/0
		낙원곱창	20230087	한식	0/1	0/1	0/1

		고속우등	20180402	분식	3/0	0/0	0/0
--	--	------	----------	----	-----	-----	-----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액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빽다방]가맹점사업자 한 명이 2024년에 올린 연간 평균 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액은 아래와 같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다 정확한 금액은 매출액 표의 상한과 하한 금액 사이에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지역별 가맹점 점포 수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미포함)

지역	2024년말 가맹점수	2024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연간 평균매출액		연간 평균매출액 (상한)		연간 평균매출액 (하한)			
		연간 평균매출액	면적 3.3㎡당	상한	면적 3.3㎡당	하한	면적 3.3㎡당		
전체	1712	324,486	20,517	978,007	109,453	61,554	2,806	1576곳 산정	
서울	359	352,053	27,940	830,598	91,641	101,662	6,462	-	
부산	34	249,386	19,407	605,690	51,330	88,772	5,932	-	
대구	79	285,295	18,775	488,358	55,665	88,251	5,540	-	
인천	143	302,325	20,072	778,018	68,006	94,973	6,030	-	
광주	23	296,599	16,949	627,328	29,780	131,917	8,794	-	
대전	112	362,890	22,079	978,007	104,137	141,742	5,510	-	
울산	10	261,143	19,131	447,227	89,445	86,978	4,832	-	
세종	27	350,294	20,500	577,065	42,831	127,024	7,939	-	
경기	440	307,523	21,298	858,189	109,453	94,174	5,370	-	
강원	51	342,015	17,675	728,832	69,219	162,104	6,121	-	
충북	50	325,914	14,543	583,621	37,743	98,226	2,806	-	
충남	93	352,134	17,858	812,115	48,271	126,370	5,148	-	
전북	88	359,019	17,351	839,191	55,946	189,754	5,683	-	
전남	61	353,149	16,852	579,569	49,205	155,310	4,818	-	
경북	44	312,479	17,149	598,156	50,394	61,554	3,216	-	
경남	52	284,780	17,844	558,467	45,856	120,424	7,184	-	
제주	46	264,397	13,226	520,697	105,460	92,423	4,238	-	

* 자료의 객관성을 위해 운영기간이 6개월 이상의 가맹점만 산정되었습니다.

<추정 방법>

- 당사에서 추정한 매출액은 다음의 산식을 따른 것입니다.

매출액

※[2024년 년간 본부매입액 / 가맹점 영업일수 = ①일평균 매입액]

※[일평균 매입액 / 본부비율(35.8%) = ②추정일매출액]

※[③일평균 일매출액 * 연간 영업일수 = ④추정 연간 매출액(가맹사업매출액)]

- 1) 일평균 매입액은 [각 점포별 2024년도 년간 본부매입액 / 가맹점 영업일수]
추정일매출액은 [일평균 매입액 / 본부비율]로 산정
 - 2) 연간 영업일수 365일을 영업한 것으로 가정한 것임
 - 3) 연평균 일매출액은 추정일매출액 * 조정지수(기준 100% / 신규 80%)로 산정
 - 4) 한계: 브랜드 내에서는 매출액 대비 매입비율이 동일하다고 가정한 점.
실제, 신규점 및 잘되는 점포는 메뉴의 양을 더 많이 주는 경우가 많음 또한
매출액은 시장경제, 점주의 노력 등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에 가맹점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표기에 기재된 매출액은 추정치로 실제 수입과 같지
않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합니다.
- 5) **직전 사업연도 말 실제 영업 6개월** 미만 점포 및 특수매장(학교내 카페체험 포함)은
매출추정에서 제외: 서울서진학교점(특수매장), 전주모래내시장점, 몽촌토성역점, 대구
복현점, 부산영도동삼점, 부천테크노파크점, 대구두류공원점, 제주한경면수월봉점, 전
주송천센트럴파크점, 주문진교향점, 종로5가역점, 잠실대교북단점, 중곡가구거리점,
신이문역점, 고양현대테라타워점, 광주상무금호타운점, 평택고덕국제신도시점, 종로3
가대로점, 충북혁신도시음성점, 다산역점, 전북장수점, 광진화양삼거리점, 제주하귀점,
대구남평리네거리점, 군산대야점, 판교우림W시티점, 제기동역점, 동수원사거리점, 인
천연수대림점, 인천성민병원점, 이천마장점, 서울송미초교점, 대전한신S메카점, 대구
동성로공평점, 서울JD타워점, 완주군청점, 신동탄해센타워점, 대전갈마네거리점, 천안
직산산단점, 세종시립도서관점, 구리검배로점, 대전노은파로스빌점, 노원상계3단지점,
서울경희대점, 김천부곡점, 신내지하차도점, 의정부경의교차로점, 한남순천향점, 제주
동문시장점, 전주효자상산점, 수원오목천점, 부평보건소점, 중곡사거리점, 고양삼송시
티점, 전남무안터미널점, 부산구포시장점, 김해아이스퀘어점, 석촌호수단길점, 담양죽
녹원점, 인천검단연세프라자점, 전주서신아이파크점, 인천송림아이원점, 시흥은계호
수점, 청주내수점, 군포신환점, 인천송도유원지점, 부산역점, 천안성정현대점, 제주한
라대점, 서울한국외대점, 대전홍도점, 광주고산점, 대구군위점, 남양주호평점, 중랑북
동신도점, 부산부곡점, 전주시청점, 익산마동풍경채점, 세종산울마을7단지점, 구로대
릉포스트8차점, 구리수택더바임점, 역촌역점, 토계원중학교점, 인천검암2지구점, 광명
두산위브점, 평택소사별삼성타워점, 경기광주퇴촌점, 대림성모점, 제주서광로동성길
점, 광명기아타운점, 오산궐동점, 속초해수욕장점, 대전효촌마을점, 안양포도원점, 은
현농협에너지점, 의정부호원한주점, 대전안골네거리점, 전북임실점, 광양칠성점, 대구
만촌역태왕점, 홍익대제3기숙사점, 잠실여고후문점, 순천서면점, 창원가음한림풀에버
점, 장수장계점, 용인신갈롯데점, 석촌배명점, 인천부개코오롱점, 연남센트럴점, 광양
성황점, 세종조치원역점, 청주가경아이파크점, 대전삼성아파트점, 인천가정고점, 양구
버스터미널점, 제주신비로점, 대구으뜸병원점, 대전대흥자이점, 종로정동사거리점, 시

홍배골한라점, 김제용지점, 둔촌동역점, 구로지밸리점, 전주만성북부점, 종로경희궁의
아침점, 천안중앙시장점, 전주만성중앙점, 인천가좌가림고점, 양산평산점, 남부터미널
점, 노량진드림스퀘어점, 당진수청호반점, 광양용강점, 김포구래휴트라움점, 경산신대
부적점, 전주한옥어진길점 총 136개 매장 제외 매출산정에 포함된 실 점포 수는
1,576개점입니다.

8. [빽다방]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빽다방]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
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4	1,712개	1,589일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별도의 지역본부를 운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구 분	수 단	기 간	지출비용			비 고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합계			7,089,372			
광고		(비공개)	3,933,355		(비공개)	
판촉			3,156,017			

※ (주)더본코리아의 2024년도 광고/판촉 관련한 지출내역이며, [빽다방 외 24개]브랜드의
광고/판촉 지출내역 일부가 포함 되어 있습니다.

※가맹본부 및 가맹점의 지출 세부내역은 <별첨 1-10>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광고비 및 판촉비를 가맹사업자와 분담하는 기준은 [9.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참고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11. 가맹금 예치

1)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사와 계약을 체결
한 [국민은행]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은행에 인터넷으로 예치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계약체결 시 별도의 자료를 드려
안내합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부서	주소	전화번호
국민은행	강남대로점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419	02-3483-4116

가맹금 예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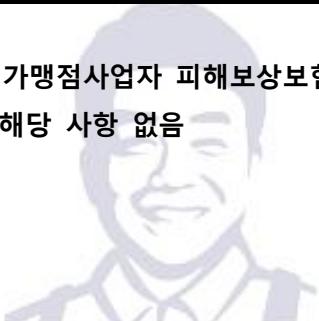
- 귀하는 가맹금을 당사의 소정서식(가맹금 이체동의서)을 작성하여 [국민은행]으로 계약체결 일을 포함하여 3일이내에 예치하셔야 합니다.
- 예치방법은 온라인이체 또는 영업점 방문을 통해 입금하시면 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 가맹금을 반환 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 가맹금을 반환 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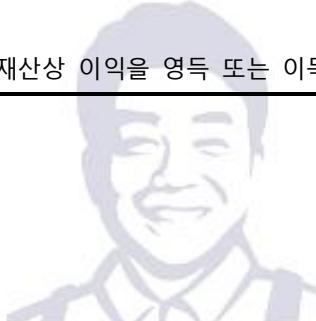
12.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 해당 사항 없음

**백다방**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	해당 사항 없음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 하는 죄와 받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	해당 사항 없음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 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	해당 사항 없음



빽다방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빽다방]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관련 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지역/위치/규모, 건물의 상태 및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 分	지급대상	예치 여부	비고(금액)
가맹비등	가맹본부	전액 예치	가맹비, 교육비 점포면적에 따라 상이
이행보증금	가맹본부		점포면적에 따라 상이
기타 비용	업체	예치하지 않음	점포면적/구조, 사용설비 등에 따라 상이

1) **최초 가맹비등**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세부내용은 [별첨 1-1]에 나와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가맹비	해당없음	계약체결 일로부터 3일 이내	-반환되지 않음 (개점전 가맹본부 에서 계약해지를 요청한 경우만 반환)	-가맹점의 모 집을 위해 비 용 소요 -본부의 대체 출점에 대한 기회비용	-개점 전 본부에서 계 약해지를 요청하지 않 는 한 반환되지 않고 즉시 소멸됩니다. -영업 중 점포면적이 상향 조정되어 가맹비 의 차이가 발생시, 당 사에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교육비	3,300				
가맹비등 합계	3,300				

*용어설명

-**가맹비**: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 가입하는 대가

-**교육비**: 가맹점이 오픈하기전 가맹본부에게 받는 교육과정 입소 비용

2) **이행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보증금은 계약종료 시 전액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채무 및 위약금을 우선 상계처리 후 반환합니다. 세부내용은 [별첨 1-2]에 나와 있습니다.

(단위: 천원)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비고
1,500	계약체결 일로부터 3일이내	-가맹본부 및 관계회사에 대한 미지급금, 본본 대여물품에 대한 정산하여 잔액 상환. (파손/기한 전 가맹계약 종료 등)	-직전 년도 전체 가맹점사업 자의 1회 평균 상품 등의 대 금의 3배 이내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예치가맹금(가맹비등 + 이행보증금)은 **4,800천원(VAT포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표
와 같습니다.

구분	금액
총 합계	4,800
가맹비등	3,300
이행보증금	1,500

(가맹비등 = 가맹비 + 교육비)

※ 가맹계약체결 일을 포함하여 3일이내 완납하여야 가맹계약이 성립함.

4) 기타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기준 평수 10평]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자	금액	3.3㎡당 평균	지급기한	반환조건	비고
인테리어 (점포 내장공사)	협력업체	16,720	1,672	별도협의	공사 전 계약 취소	점포 면적/구조 에 따라 상이
시설집기		41,665	4,167		설치 전 계약 취소	설치 설비/집기 에 따라 상이
간판/싸인물		5,385			상품 미공급시	간판 면적에 따 라 상이
POS		1,738				설치 장비에 따 라 상이
CCTV/PTZ (원격회전카메라)		300				
초도물품대등	더본코리아등	2,464		물품입고	상품	점포 면적에 따

				의월	미공급시	라상이
총계		68,272	업체와 별도 협의	상세설 계전 계약취 소		

- ※ 점포 내장공사란 매장의 브랜드 매뉴얼을 반영하여 주방과 홀의 마감재를 붙이기 위한 목공사/금속공사 내부 전기공사, 급배수공사 등 인테리어 요소를 시공한 순수 내부공사를 의미합니다.
- ※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매장의 크기, 구조, 점포컨디션, 점주 선택사양, 구입품목, 구입수량, 설치 기간을 초과하여 생기는 추가 비용, 물가 변동 등에 따라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 매장 면적 및 구조에 따라 테이블(10평 기준/약 872천원/VAT포함) 및 [점주 선택 시] 키오스크스탠드형 1셋트(1셋트당 2,997천원/VAT포함)가 추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 **매장 면적 및 구조에 따라 디스플레이(내부3대, 외부1대/약 6,500천원(설치비포함, 출장비별도))** 가 추가 설치될 수 있으며 세부 사양은 <별첨1-9>와 같습니다.
- ※ 점포 내장공사시 철거, 냉난방기, 전기/가스 증설, 덕트공사, 소방설비, 화장실, 외부공사(테라스, 자동문, 창호 포함), 주방순간온수기, 냉동창고, 어닝, 용도변경, 각종 인허가, 지방 체제비, 디스플레이비품, 대형건물등의 특수요구사항, 통신설비 등은 점포의 여건에 따라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같은 평형대라도 점포 형태에 따라(건물형태, 현장상황, 노후정도, 품목 및 수량, 외장 및 내부옵션공사, 1차 설비-전기) 금액이 변동될 수 있으며, 실제 금액이 위 면적당 금액에 해당 매장의 면적을 곱한 금액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습니다.
- ※ 점포의 운영형태에 따라 지불 금액은 달라 질 수 있습니다.
- ※ 위 시공내역 및 지급대상은 당사의 경영방침과 협력업체의 일정 및 품질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정확한 금액은 계약체결 시 매장실측 후 별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 ※ 매장내부공사 비용은 상기 금액이 최소금액으로 **33㎡(약10평)** 미만일 경우에는 비용이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 위 비용은 점포 임대를 위한 부동산 관리비용(임대보증금/권리금/부동산증개수수료 및 기타 인허가 비용)은 제외한 투자비입니다.
- ※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는 [더본코리아 협력업체] 또는 [가맹점사업자 개별 지정업체] 중 선택하여 매장내부공사 시공을 의뢰할 수 있으며, 선택한 시공업체와 각각 직접 계약을 체결한 다음, 각각의 공사비용은 계약을 체결하고 시공을 의뢰한 시공업체와의 계약서를 기준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 ※ 개점을 위해 필요한 모든 품목은 가맹사업 전체의 통일성과 독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당사가 정한 매뉴얼 및 사양에 따라 설계, 시공, 구매, 유지 하여야 합니다.(기존 시설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개점을 위한 필수설비(점포 내장공사 등)는 가맹사업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당사 또는 당사의 협력업체의 가이드를 받거나 의뢰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 용어정리

① 설계 및 도면 작성비 :

실측, 레이아웃, 시공계획도면(실측도, 평면도, 입면도, 천정도 등) 등 작업을 위한 비용

② 매뉴얼 관리감독비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위하여 귀하와 협의하여 확정한 가맹점 실내외설계도면 매뉴얼 등에 따른 관련 공사를 감독할 수 있고, 귀하는 이에 대한 대가로 본사 또는 지정된 감독업체에 매뉴얼 관리감독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가맹점 운영 중 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도 이와 동일 합니다. 매뉴얼 관리감독비는 공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반환되지 않음이 원칙입니다.

※ 인테리어 공사시 지정업체의 설계 및 도면작성비가 추가로 발생되며 2,750천원[15평까
기본고정비 2,750천원(15평 초과 / 평당 55천원 증가)]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지정업체 이외의 가맹희망자가 직접 인테리어 공사를 할 경우, 당사에서 지정한 업체의 관리 및 감독하에 시공하여야 합니다. 이의 경우 귀하는 당사에서 지정한 업체가 제공하는 매뉴얼 관리감독비로 2,750천원[10평까지 기본고정비 2,750천원(10평 초과 / 평당 275 천원 증가)]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지정업체 이외의 가맹희망자가 직접 간판 공사를 할 경우, 당사에서 지정한 업체의 관리 및 감독하에 시공하여야 합니다. 이의 경우 귀하는 당사에서 지정한 업체가 제공하는 매뉴얼 관리감독비로 당사가 견적한 간판금액의 11%(VAT포함)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 귀하가 인테리어 및 간판에 대한 공사를 당사 또는 당사의 지정업체에서 시공하는 경우에는 매뉴얼 관리감독비는 면제됩니다.

① 당사가 정한 브랜드의 통일성과 독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매뉴얼 및 사양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② 가맹점사업자가 지정한 업체는 매뉴얼을 이해하고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최소 한의 자격.<별첨 1-6>을 갖추어야 한다.

③ 필요시 가맹점사업자의 지정한 업체가 제공받는 인테리어 매뉴얼은 가맹본부의 중대한 영업비밀에 해당되며 유출 방지를 위하여 "디자인 유출 방지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실측, 레이아웃, 시공계획도면 진행 후 계약취소 시, 업무진행정도에 따라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각각의 해당 업체에 지불 하여야 합니다.

※ 공사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및 설계, 관리감독비, 이동식가구 등의 지급기한을 경과하였을 경우 별도의 금융비용을加산하지 않으나 점포 내장공사, 착공연기, 공사중단, 물품 공급 보류/중단, 계약해제 또는 해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점포 내, 외관에 불법적인 시공을 권장하지 않으며, 불법건축물 및 돌출간판 등에 해당 할 수 있는 시공은 가맹본사가 아닌 가맹점사업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시공 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점포 내장공사와 간판 및 사인물에 당사가 사용을 허락한 로고 등 이미지의 규격, 재질 및 점포 내장공사와 간판 및 사인물이 브랜드의 통일성에 따라 적정한 품질로 완성되었느냐 등을 검수하며 점포 내장공사와 간판 및 사인물의 내용물이나 하자에 대한 검수를 하지 않습니다. 공사와 관련된 내용물이나 하자에 대한 조치는 귀하가 계약한 거래 상대방을 통해 논의해야 합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에 대해서는 부동산등을 통한 알선을 하지 않고, 가맹희망자가 직접 입지를 물색하게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입지가 당사의 브랜드 별로 정한 규정에 적합한가 등에 대해 심사 후 승인여부를 통보합니다. 당사에서 승인한 입지에 대해, 당사에서는 매출이나 영업에 대한 어떠한 보장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가맹희망자는 매출/임차료 등에 대한 적합성과 해당 입지가 법적/구조적으로 가능한지 등에 대해 스스로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가맹희망자	<p>당사의 브랜드 별로 정한 규정에 적합한가 등에 대해 심사 후 승인여부를 통보합니다.</p> <p>①창업설명회 참석 → ②가맹희망자 입지확인 후 해당 브랜드담당자 전달 →③지도 /사진&현장 방문 승인여부 결정/통보→ ④가맹희망자 최종 결정 -승인여부의 사내 기준- 1)기준 [빽다방] 점포와의 상권중복 여부 2)점포의 전용면적 적합성 3)점포의 위치: 1층 우선 (상권이 우수한 경우 제한적으로 2층도 고려) 4)가시성 및 접근성 5)주변 동종업종 분포 6)기대수익에대한 실현가능성</p>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구 분	교육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 사업자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피성년후견인 아닐 것 -향후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취득 가능자

종업원 (홀/주방)	특별한 기준 없음	-만 19세 이상 -향후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취득 가능자
---------------	-----------	---

※ 가맹점사업자의 건강진단결과 발견된 문제점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포 개설이 불가능할 경우 당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 귀책사유이므로, 당사에서는 가맹비등을 일절 반환치 않습니다.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 [빽다방]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지정업체는 가맹본부의 정기적인 평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8) 당사는 가맹금 분납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부가세 포함)

구 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수 없는사유	비고
로열티	가맹본부	<별첨 1-3>	의월 5일 내 납부			
광고분담금	가맹본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상호 협의하여 금액 결정	별도 약정			미 통지 시 본부부담
판촉분담금	가맹본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상호 협의하여 금액 결정	별도 약정			미 통지 시 본부부담
교육훈련비	가맹본부	교육실비지급 (1회당 110만원이하)	실시 10일이 전	실시전 취소	교육실시 이후	교육 필요 시
시설, 각종	협력업체	업체와 별도 계약	별도약정			

기기의 교체. 보수비 용	& 개별업체					
점포환경개선 비용						
POS 프로그램 사용료	협력업체	업체와별도 계약	별도약정			설치장비.수량 에 따라 상이
POS 유지보수료		업체와별도 계약	별도약정			
CCTV/PTZ 유지보수료		업체와별도 계약	별도약정			
DS 할부(렌탈), 유지보수료		업체와별도 계약	별도약정			
지연이자	가맹본부	-	-	-	-	-
물류비	가맹본부	*제주도/도서산간 지역: 택배비 별도 부담	즉시 지급			VAT별도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 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2024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은 추정금액으로 2024년도에 당사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한 구입요구품목의 매출액에서 해당 품목의 구매금액 합을 뺀 차액을 6개월 이상 운영한 가맹점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 경우 전년도에 구입하여 금년에 공급하는 부분, 금년에 구입하였으나 아직 공급하지 않은 부분, 자체생산품목에 대한 차액가맹금 미포함 등으로 인한 오차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 당사는 위생사고나 메뉴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식재료 보관/재고관리의 적절성 등에 점검 및 보완에 대해 분기별 또는 수시 점검 하며, 회계처리에 대해서는 감독하고 있지 않습니다.

3. 계약 종료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는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 포함)하기 위해서는 매월 로열티를 부담하여야하며 세부내용은 [별첨 1-3]에 나와 있습니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 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도록 노력합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1) 귀하가 운영하는 [빽다방] 브랜드의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문서에 의한 본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변경은 명의변경이 아닌 영업의 양수도로 판단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변경되는 법인"은 영업의 양수도와 관련한 절차의 준수 및 관련 비용을 다시 지급여야 합니다.)

(2) 가맹본부에서는 양수 받기를 희망하는 자의 적성이나 인성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므로 승인이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3) 본부의 승인에 의해 영업권을 양도 받는 자는, "교육비", "로열티" 및 "이행보증금"을 가맹본부에게 다시 즉시 지급하여야 합니다.

(4) 그 금액은, 양도되는 시기의 "교육비", "로열티" 및 "이행보증금"에 대한 본부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이러한 금액은 물가변동이나 가맹본부의 정책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4) 계약 종료후의 조치 사항

: 계약 종료 후에도 아래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시, 가맹점사업자는 일정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당사에 지급하여야 하고, 이와 별도로 가맹본부는 민사상 혹은 형사상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 (1) 영업중단 및 간판 철거, 이미지 및 상표, 상호, 표장, 디자인, 싸인물, 로고 등을 파기해야 합니다.
- (2) [빽다방]과 관련된 일체의 경영노하우, 조리방법 및 레시피와 같은 사업비밀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 (3) 매뉴얼, 교육자료, 설비 등과 같은 사업본부의 자산은 즉시 반납/확인 받아야 합니다.
- (4) 가맹계약서 및 제공된 정보공개서 반납/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5) [빽다방]의 이미지 혹은 시스템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업적 이미지, 디자인, 로고, 영업형태, 시설이나 외관을 사용하여 고객에게 혼동을 유발하지 않아야 합니다.
- (6) 본부로부터 인테리어나 간판의 개선에 대해 지원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 지원 받은 지 3년 이내에 폐점이나 영업을 양도할 경우에는 지원받은 금액 중 나머지 기간에 비례하는 금액을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 (7)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이 종료되면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점포"의 폐업신고를 하고 폐업신고 확인증(상호변경등록을 하고 상호변경등록 확인서)과 함께 서면으로 가맹본부에 이행보증금 및 로열티 미경과분 등에 대한 반환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 (8) 가맹점사업자가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자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반품하고자 하는 경우 물품의 재고량, 오.훼손 등 관리상태, 소비기한(유통기한) 등을 고려하고 계약 종료 전 일정한 범위(10~90%)에서 반품이 가능 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당사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빽다방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귀하는 [빽다방]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 설비, 용역 및 원/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상기 이외의 품목은 <별첨 3-1>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귀하는 가맹계약 체결 시 당사가 제공하는 권장 규격 및 사양에 따라 위 표에 기재된 물품을 구입 및 설치해야 합니다.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물품을 지정된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은 귀하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 다른 품목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 <별첨 3-2>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빽다방]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에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명칭	관계	경제적 이익의 대상이	경제적 이익의	비고
----	----	-------------	---------	----

		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명칭	내용	
(주)디에스아이시스템	계열회사		(비공개)	

※ 특수관계인이 2024년도 (주)더본코리아 가맹점에 판매한 지출내역이며, [빽다방 외 24개] 브랜드의 판매 매출내역 일부가 포함 되어 있습니다.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1) 당사는 가맹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2) 당사가 [빽다방]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이미지를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질성을 유지하기 위해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메뉴를 무단으로 삭제해서도 안됩니다.

메뉴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 시 책임	비고
주메뉴	원조커피 (HOT/ICED)	가맹본부에서 정한 메뉴 외에는 추가 혹은 삭제하고 판매할 수 없음. 메뉴의 레시피를 무단으로 변경하는 것도 금지됨.	2개월간의 기간을 두고 2회 이상의 시정요구 및 미시정시 해지하겠다는 서면 통지 후 미시정시 해약 가능 (단, 시정한 날부터 1년이내에 다시 같은
	아메리카노 (HOT/ICED)		2025.03월 기준
	카페라떼 (HOT/ICED)		
	바닐라라떼 (HOT/ICED)		

달달연유라떼 (HOT/ICED)	사향을 위반하는 경우 통보와 동시 해지)	
카페모카 (HOT/ICED)		
캬라멜마키아또 (HOT/ICED)		
초코라떼 (HOT/ICED)		
녹차라떼 (HOT/ICED)		

귀하가 위 표에 표시되지 않은 메뉴를 판매하려고 하거나, 위에 표시된 메뉴를 판매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특히 메뉴의 레시피를 무단으로 변경하여 메뉴에 대한 맛의 동질성을 훼손하는 것도 매우 심각한 계약위반 사항으로 취급하고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아래 표에 기재된 메뉴를 삭제할 수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고객에 대해 상품/용역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상대방(고객)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미성년자(청소년)	주류		2개월간의 기간을 두고 2회 이상의 시정요구 및 미시정시 해지하겠다는 서면 통지 후 미시정시 해약 가능	
고객	소스	거래상대방 별로 기재된 제품은 판매할 수 없음	(단, 시정한 날부터 1년이내에 다시 같은 사향을 위반하는 경우 통보와 동시 해지)	

※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이미지의 통일성을 위해 판매되는 메뉴에 대해 가격을 정하여 이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이러한 판매가격은 물가상승 등을 반영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메뉴명		권장가격	가격 통보 방법	비고
주메뉴	원조커피 (HOT/ICED)	2,500	가맹점사업자 대상 인터넷카페 나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2025.03월 기준
	아메리카노 (HOT/ICED)	1,500/2,000		
	카페라떼 (HOT/ICED)	3,000		
	바닐라라떼 (HOT/ICED)	3,700		
	달달연유라떼 (HOT/ICED)	3,700		
	카페모카 (HOT/ICED)	3,500		
	캬라멜마키아또 (HOT/ICED)	3,500		
	초코라떼 (HOT/ICED)	3,500		
	녹차라떼 (HOT/ICED)	3,800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메뉴를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협의해야 합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일반인에게 커피와 빵, 기타음료를 주된 메뉴로 판매하는 중저가 커피판매 업종	빽다방	해당없음

당사가 [빽다방]의 가맹계약 중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2) 영업지역의 설정기준

설정기준	설정방법
<p>점포를 중심으로 반경 (0.1)km</p> <p>-왕복4차선 건너편 비보호(동일브랜드 출점 가능)</p> <p>-특수상권(대형마트, 쇼핑몰, 지하상가, 공항, 호텔, 대학, 기차역, 지하철역, 터미널, 경기장, 휴게소, 종합병원 등)은 행정구역과 상관없이 별도의 영업지역으로 인정하여 상권설정 내라도 추가 출점 가능</p>	<p>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p>

*가맹계약 별지의 영업지역 설정을 원칙으로 하며, 가맹계약 갱신 시 합의하여 재조정 할 수 있다.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 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p>1)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p> <p>2)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p> <p>3)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p> <p>4)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p>	<p>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가맹점사업자 동의 또는 별도 협의 후 합의 → 재조정</p>	<p>가맹본부가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서면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동의 회신이 있는 경우 영업지역 재조정. 만약, 가맹본부의 변경(안)에 가맹점사업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 절차를 거쳐 합의함.</p>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대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 1)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 2) 영업지역을 침해 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 3)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빽다방]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의 [빽다방]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구분	영업표지	취급품목	가맹점과의 구분
일반소매점 (라이선스)	롯데칠성	(빽다방)황금라떼, (빽다방)바닐라라떼, (빽다방)바닐라블랙	세부업종이다름 완제품판매
일반소매점	(주)이마트	(빽다방)블랙커피, (빽다방)연유라떼, (빽다방)스틱커피 2종(블랙,믹스)	세부업종이다름 완제품판매
일반소매점	(주)비지애프리테일	(빽다방)블랙커피, (빽다방)연유라떼, (빽다방)스틱커피 2종(블랙,믹스)	세부업종이다름 완제품판매
도매점	광동제약(주)	(빽다방)스틱커피 3종 (블랙, 스위트블랙, 믹스)	세부업종이다름 완제품판매
수출	희창물산	(빽다방)스틱커피 2종(블랙,믹스)	세부업종이다름 완제품판매
기타	주식회사 티엠씨엔터	(빽다방)블랙커피, (빽다방)연유라떼	세부업종이다름 완제품판매
기타	주식회사 피앤훌딩스	(빽다방)블랙커피, (빽다방)연유라떼	세부업종이다름 완제품판매
기타	소매매출(내부직원판매 등)	(빽다방)블랙커피, (빽다방)연유라떼	세부업종이다름 완제품판매

*라이선스 상품은 당사와 롯데칠성(또는 롯데푸드)이 "빽다방" 상표권 활용 관련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여 개발한 상품을 말합니다.

*기타 항목은 개별 기업 또는 개인(내부직원 등)에게 판매한 소매품목입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흡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

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의 [빽다방]은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하고 있습니다.

구분	유통업체명	주소	취급품목	가맹점과의 구분
온라인	네이버주식 회사	https://smartstore.naver.com/thebornmarket	(빽다방)블랙커피, (빽다방)연유라떼, (빽다방)스틱커피 2종(블랙, 믹스)	세부업종이다름 완제품판매
온라인	더본몰	https://thebornmall.com/	(빽다방)수박주스, (빽다방)블랙커피, (빽다방)연유라떼, (빽다방)스틱커피 2종(블랙, 믹스)	세부업종이다름 완제품판매
온라인	지마켓	https://www.gmarket.co.kr/	(빽다방)스틱커피 2종(블랙, 믹스)	세부업종이다름 완제품판매
온라인	옥션	http://www.auction.co.kr/	(빽다방)스틱커피 2종(블랙, 믹스)	세부업종이다름 완제품판매
온라인	주식회사 컬리	https://www.kurly.com/	(빽다방)스틱커피 2종(블랙, 믹스)	세부업종이다름 완제품판매
온라인	카카오쇼핑 하기	https://store.kakao.com/	(빽다방)스틱커피 2종(블랙, 믹스)	세부업종이다름 완제품판매
온라인	카카오선물 하기	https://gift.kakao.com	(빽다방)스틱커피 2종(블랙, 믹스)	세부업종이다름 완제품판매
홈쇼핑	씨제이이엔 엠	display.cjonstyle.com	(빽다방)수박주스	세부업종이다름 완제품판매
홈쇼핑	에스케이스 토아	http://www.skstoa.com/index	(빽다방)수박주스	세부업종이다름 완제품판매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해당없음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4	99.30	0.66	-	0.04

*기타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은 당사 직영점과 V4.5) 상품 판매 매출액 비중입니다.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4	-	10

*당사는 직전사업 연도에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기에 가맹점에서만 판매하는 전용상품이 없습니다.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은 위 V.4.6) (빽다방)수박주스 상품입니다.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의 기간

: [빽다방] 브랜드의 가맹사업의 **최초계약기간은 계약월을 기준으로 2년입니다.**

계약기간 종료 후 가맹본부나 가맹점사업자중 어느 일방이 계약해지를 통보하지 않는 한 1년 단위로 자동연장 됩니다.

*로열티는 물가 상승 등 경제여건의 변화나 당사의 서비스변화 등을 고려하여 로열티의 인상에 대한 추가수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 갱신이나 연장일 90일 이전까지 귀하에게 통보합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서	기간 (계약기간 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D-90
② ③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 (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체결(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사유	관련 계약조문
①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6조5항, 19조, 24조
②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26조 2항, 24조
③가맹점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9조, 24조
④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을 지키지 않는 경우	12조, 24조
⑤점포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3조2항, 4조, 24조
⑥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7조, 12조7항, 24조
⑦최초의 가맹계약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 (양수도점은 양수도일에 계약	24조

이 다시 시작되는 것으로 판단함)	
--------------------	--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 조문
합의해약	<p>① 개점 후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서로 합의하면 계약기간의 종료 전에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음 (이 경우 상호 위약금을 청구치 못함)</p> <p>② 1) 항의 합의 전 최소 5주일전 문서로써 사전 통보해야 함</p>	25조
2개월간 의 기간을 두 고 2회 이상 의 시정요구 후 미시정시 해지가능	<p>① 아래 내용의 미준수, 미실행, 미입금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포에서 다른 사업을 하거나 동의하지 않은 메뉴 판매 등 - 당사 시스템, 상표, 저작물 등의 점포경영 외 사용이나 무단 변경 등 - 본사의 승인 없이 점포의 위치를 무단 이전한 경우 - 점포의 확보, 내외장 인테리어, 시설/집기등의 투자, 인허가, 가맹비등, (개점전)로열티, 이행보증금 중 하나라도 미실행 /미입금 등 - 점주연수 또는 친절, 조리 교육 등 비용이 발생하는 교육이 있는 경우 교육비/연수비 미지급 - 본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개점의 자연이나 자체의 경우 - 고의로 타 점포의 종업원에 대한 무단 스카우트 - 본사와 협의 되지 않은 권장가격판매 및 운영매뉴얼(조리방법/레시피/원산지표시의무 등) 미준수 - 규정목적 외 용도로 점포활용 - 시설/집기의 비정상작동을 무단 방치하여 정상영업 및 브랜드 이미지에 지장을 주는 경우 - 24시간 영업 점포인 경우 지속적인 클레임이나 운영수준 저하 등 24시간 영업 중단 사유로 인한 중단조치에도 불구하고 미준수 - 지정 거래선의 이용을 위한 절차 위반 - 본부 승인 받지 않은 브랜드와 관련된 홈페이지/블로그/카페 등 운영 - 물품대금/물류비 결제기일 미준수 - 당사에 예탁한 이행보증금에 대한 임의 처분(양도/담보설정등) - 방문점검시 방해 및 미협조 - 방문점검 후 시정 및 개선 사항에 대한 미시정 - 방문점검 후 소비기한(유통기한) 경과품 적발시 현장교육/지도비 미지급 	26조 2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객클레임 해결 노력 미흡 및 당사가 고객클레임을 대신 해결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에 대한 미지급 - 납부 유예나 기타 협의 없이 납부기한 내로열티 미지급 등 - 계약기간중 혹은 공사중 점포면적 변경에 따른 가맹비/교육비 및 이행 보증금 차액의 발생 시 미지급 - 점포환경 개선 시 브랜드 컨셉 및 적합한 기준 절차 미준수 - 영업의 양도 및 명의변경 시 절차 미준수한 채 진행한 경우 - 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의 절차 미준수한 채 진행한 경우 <p>②행정처분등 중요한 변동사항 발생에 대한 미통보</p> <p>③당사에 대한 중대한 불실행위가 있었을 경우.</p>	
--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 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즉시 계약 해지 사유(당사의해지권)	관련 계약 조문
①파산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②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 정지된 경우	
③천재지변이나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④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장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26조 1항 (가맹사업법시행령 제15조)
⑤<삭제>	
⑥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 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	

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⑦가맹점사업자가 법 제 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한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⑧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⑨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⑩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계약조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 ②의 경우에는 귀하가 그 차액을 당사에 지불해야 합니다.)

계약 수정 사유	관련 계약조문
①가맹점사업자의 상권보호를 위하여, 동일한 브랜드로 추가 출점을 하지 않겠다고 지도에 표시하여준 지역내 추가 출점이 필요한 경우에는 귀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5조 2항
②계약기간중 점포면적의 확장으로 인하여 전용면적이 증가하여 가맹비/교육비/이행보증금 금액의 차액이 발생한 경우 그 차액을 당사에 지급해야 합니다.	20조 1항
③ 가맹본부는 가맹본부의 출점전략이나 "점포"의 수익 등을 고려하여, 가맹비등이나 로열티를 감액할 수 있다.	6조 8항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수정 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수정 계약서(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수정 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 발생

※가맹본부는 계약 수정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를 수정안과 함께 통지하여야 하고, 가맹본부의 수정 요청에 대하여 가맹점사업자는 불합리하게 동의를 거부하지 아니한다.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당사의 사전승인 없이 이루어진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등은 당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습니다.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 당사는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제도 = 가맹점을 일시적으로 직영점으로 운영하는 제도)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 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될 경우 영업의 양수도로 판단합니다.)

당사는 승인 요청 받은 날로부터 20일 내에 승인여부를 통지하고 거절하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합니다.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승인 여부는 해당 양도의 적절성 여부에 관한 당사의 검토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만약 승인되지 않을 경우 귀하는 당사에게 양도가 무산된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양도 가능 기준	양도 절차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수인이 당사가 요구하는 가맹점 운영기준을 준수할 수 있을 것 -당사가 요구하는 가맹점 사업자의 기준에 적합할 것(연령/적성/성격/프랜차이즈 이해도 등) 	<p>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당사자간 계약 체결 예정일 5주전) → 당사 담당팀 면담/검토(20일소요) → 승인여부 통지 → 양수도 신규계약 체결 /양도자 합의 해약 실시 → 개점 전 교육 실시 (점주/종업원) → 가맹점운영권 이전완료</p>	<p>문의:프랜차이즈사업본부 (02-549-3864)</p>

당사는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과는 신규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양수인은 가맹비를 제외한 교육비 및 이행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양수인과 당사간의 가맹계약이 체결되면,

당사와 양도인과는 합의에 의해 가맹계약을 해약한 것으로 간주하여 당사에서는 위약금을 받지 않습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상속 외에 개인사정 등으로 인한 가맹점운영권의 제3자에 대한 대리행사 또는 업무위탁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 분	가능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비고
상속	-	가맹점사업자 의 모든 권리의무	당사검토→담당부서 검토→승인 여부 통지→가맹계약체결→상속 완료	교육수료 및 교육비 지급 (교육비)
대리행사	불 가	-	-	
업무위탁	불 가	-	-	

: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 당사는 계약기간 내에는 귀하가 **[빽다방]**과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국내 전 지역에서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 고
일반인에게 커피와 빵, 기타음료를 주된 메뉴 로 판매하는 중저가 커피판매 업종	해당사항 없음	문의:프랜차이즈사업본부 (02-549-3864)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 당사는 **[빽다방]브랜드**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에 대해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단, 귀하의 점포가 개점 후 매출의 추이를 관찰하여 영업시간과 휴무일에 대해 상호 협의합니다.

영업 시간	영업 일수	비 고
개점 후 협의	개점 후 협의	문의:프랜차이즈사업본부 (02-549-386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개인 사정 등으로 영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하거나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부서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 의거 오전 0시 또는 1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매출이 영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저조하여 3개월간 영업손실이 발생하거나, 질병

의 발생과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영업 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팀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점포에서 24시간 영업을 원할 경우, 본부에 사전에 통보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점포의 운영수준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본부에서는 점포의 24시간 영업을 승인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특별히 제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장 종업원수	직접 근무 여부	대체 가능 인력	비고
필수 운영인원	직접 근무(권장)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본사 교육이수)	점주의 부재시 가맹본부에 사전 통보

귀하가 영업장에 반드시 근무해야 한다는 강제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원활한 매장운영을 위해서는 주방과 홀에 각각 권장 종업원수 이상의 인원을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귀하가 영업장에 직접 근무하기 곤란한 경우는 음식업에 경험이 있는 책임자를 채용하여 점포를 운영하게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감독항목	감독 절차	빈도 및 시기	담당팀	비 고
홀관련 (20개항목)	담당자 매장 방문 → 관리/감독항목 확인	연간 3회 내외	운영	
주방관련 (20개항목)	→ 점포점검 List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설명	(점주카페를 활용한 사진점검 포함)	점검팀	
메뉴(3개항목)	/개선방향 구두 협의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와의 관점 및 눈높이의 일치를 위해 <별첨 2> 점포점검List와 같은 Check List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검의 결과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설명하고 개선방향에 대해 상호 협의합니다.

-전체 점포에 대한 메뉴관련 혹은 친절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분기에는, 본부 담당자가 귀하의 매장을 방문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 당사는 [**빽다방**]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체인 전체의 판촉 등 마케팅 활동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서는 가맹점사업자와 상호 협의하여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분	광고성격	부담비율		분담 절차	비고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광고 전체 행사	상품광고	광고별 별도협의	그 외 비용	계획공고→비용 부담범위 공고→진행	
	가맹점모집	전액부담	-	포스터 부착 협조	
판촉행사	전 점포 행사	행사별 별도협의	그 외 비용	행사별 별도 협의	
	개별점 행사	없음	사업자전액부담 원칙		본사 사전협의
모바일상품권	제휴행사	50%	50%	월 단위 정산 - 대금 청구 반영	대금 청구 별도공지
할인카드/ 멤버십/ /O2O마케팅 제휴서비스	제휴행사	- 진행별 별도 협의			별도공지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 당사는 가맹점사업자가 독자적으로 판촉을 하려는 경우에도 반드시 당사와 사전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해당 점포의 판촉으로 인해 주변 점포의 클레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미리 주변 점포에 알리고 동의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체인 전체의 이미지 통일을 위해서입니다.

3) 주류업체 등 거래업체 전 점포/체인점 판촉으로 인한 수익 발생시 배분

- 개별점 판촉: 수익금액의 50%를 가맹본부에 배분
- 전점포 판촉: 가맹본부가 수령한 수익금액 중, 각 점포별 수익금액의 50%를 가맹점사업자의 점포에 배분 (단, 본부/주류업체 등이 제시한 기준을 충족하는 점포에 한해 배분)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가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개발하고 촉적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의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 영업비밀이나 중요정보의 유출이라고 하면, "갑"의 "Brand"의 시스템/레시피/조리방법/접객방법/매뉴얼/가맹계약서 등의 노하우를 "갑"의 사전 문서에 의한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양도/열람/대여/복사 등의 처분을하거나 점유케 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양도를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점포"내에서 근무/교육하게 하거나, 제3자에게 "점포"의 경영권을 양도한 경우도 이에

포함됩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 중 어느 일방이 가맹계약서의 각 조항에 정한 것을 위반 혹은 의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계약해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상대방이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하여야 합니다.

- 1)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상호 합의하여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최소 5주일전에 문서로써 사전 통보하여야 하며, 위반시 일백만원(₩1,000,000)을 지급해야 한다.
- 2) 가맹계약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의 손해배상금은,
 - 일매출 제출시: "직전분기 3개월간의 평균 일매출액 X 계약 종료후의 영업일수 X 30%"의 공식을 적용한다
 - 일매출 미제출시: "직전 분기 3개점의 평균 일매출액 X 계약 종료후의 영업일수 X 50%"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 3) 가맹계약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 종료 후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게 (지체일수 X ₩100,000)을 지급해야 한다.
단, 해당 조항에 따라 손해배상금액을 규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릅니다.

12. 가맹본부의 가맹점 CCTV/PTZ 자료 열람에 관한 사항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CCTV/PTZ 자료 열람 요청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가맹본부의 CCTV/PTZ 자료 자료 열람의 목적은 하기와 같습니다.

- 고객클레임 발생 시 근거자료 활용
- 가맹점 위생상태 및 제품 제조과정 및 제품상태를 확인

단, 가맹본부는 영업시간내 자료만 열람 요청을 할 수 있으며 가맹점의 개인정보 유출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게 손해배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3. 가맹본부의 가맹점 매출자료 열람에 관한 사항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가맹점 매출자료 열람 요청시 매출자료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가맹본부의 가맹점 매출자료 열람 목적은 하기와 같습니다.

- 가맹점사업자의 경영 · 영업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조언과 지원
- 가맹점사업자의 성공을 위한 사업구상

단, 가맹본부는 매출자료 열람 목적이외의 사유로 자료를 열람할 수 없으며 위반시 가맹점 사업자는 가맹본부에게 손해배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4. 가맹본부/가맹본부 임원의 위법행위 등의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 가맹본부/가맹본부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가맹점은 가맹본부에게 손해배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5. 향후 본부 POS 구축시의 비용 부담 관련 사항

- 가맹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점포운영에 도움을 주기 위해, 본부 지정 POS업체 및 시스템(프로그램,기기장비,VAN사)을 도입, 개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이에 필요한 투자금액 및 관련 비용은 <별첨 1-8> 표와 같이 부담하기로 합의합니다. 단, “점포 POS System”에 대한 구입비는 협력업체와 협의하여 최대한 저렴하게 공급키로 합니다.
- 가맹본부의 지정 POS업체 및 시스템 등(프로그램,기기장비,VAN사)을 도입할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본부 지정 POS업체 및 시스템 등(프로그램,기기장비,VAN사)으로 변경하여 적용합니다.



백다방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45일 정도가 예상되며,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45일 내외	
가맹희망자 문의	-전화/인터넷 문의 접수 -간단한 정보제공 및 사업설명회 참석 요청	D-45	-
창업설명회 및 개별상담	-사업전반 설명 -필요시 개별상담 진행 (구체적인 지역/점포가 있는 경우)	D-40	-
물건 소싱	-부동산 방문/물건 소싱 -물건 방문/상권확인 등	D-40~25	-
물건접수/방문	-가맹희망자가 제시하는 물건 접수/사전분석 -물건방문 및 당사 기준에의 적합성 판단 -승인여부 내부 결정	D-40~25	-
최종 협의	-최종 협의 후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D-40~25	-
계약 체결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일로부터 14일이후 계약 체결	D-25	-
가맹비등 외 예치	-국민은행에 가맹비등/이행보증금 예치	D-25	-
종업원 모집/채용	-적정 종업원수 협의 -종업원 모집/채용	D-25~10	-
점포 실측/설계	-인테리어 등 공사업체 선정 -점포 실측/설계/공사비등 비용 산출	D-25~22	-
인허가 문의/취득	-인허가 기관 방문/협의 -인허가 취득	D-25~22	-
도면 협의 등	-도면 협의 및 승인	D-22	
인테리어 등 공사	-공사 실시 (인테리어, 주방 설비/집기, 전산설비 등)	D-21~2 (20일)	-
교육 실시	-점포 이론/실습교육 실시 -Test 및 승인 (or 재교육)	D-11~2 (10일)	-

개점	-개점 및 영업시작	D-day	-
----	------------	-------	---

귀하는 가맹비등(가맹비/교육비) 및 이행보증금을 당사의 소정서식을 작성하여 국민은행에 계약 체결일까지 예치신청 하여야 합니다. 국민은행에 인터넷으로 예치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계약체결 시 별도의 자료를 드려 안내합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가맹점사업자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 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합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개선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간판교체 비용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 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20%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40%
지급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사 후, 가맹점사업자의 비용청구. -가맹점사업자의 비용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 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 범위 내에서 분할 지급 가능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 가맹점사업자의 비용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 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1차: 90일이내,30% /2차: 1차지급일로부터 60일이내,30% /3차: 2차지급일로부터 60일이내,40%)
협의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맹본부의 권유(서면발송) → 가맹점동의(서면회신) → 환경개선 시행 -가맹점 신청 → 가맹본부 검토 및 승인(서면 승인) → 환경개선 시행
비용부담 제외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 (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 되는 경우 가맹본부의 부담액 중 잔여 기간에 비례 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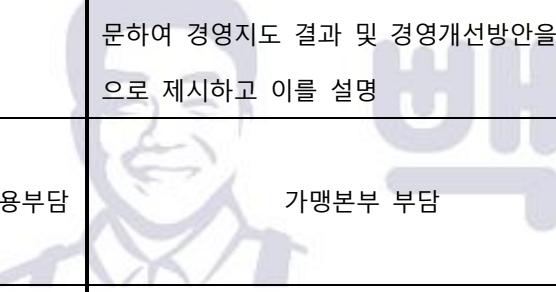
비고	
----	--

2. 판촉진행 시 인력지원 등 내역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당사는 별도의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가맹본부 요청 시	가맹점사업자 요청 시
대상 및 내용	상품,설비(집기).판매촉진, 고객관리,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상품,설비(집기).판매촉진,고객관리,위생관리,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절차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지도내용, 기간, 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설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 사업자에게 제시→지도 후[14]일 이내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지도 후[14]일 이내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비용부담	가맹본부 부담 	가맹점사업자 부담 (로열티에 포함된 통상의 경영지도 비용을 초과한 부분에 한함)
비고	문의:가맹지원팀 (02-549-3864)	문의:가맹지원팀 (02-549-3864)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빽다방] 가맹점사업자를 위하여 어떠한 신용 제공 또는 알선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은 가맹점사업자가 책임지고 조달하셔야 합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당사는 별도의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 내용

당사는 **[빽다방]** 브랜드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구 분	주요 내용	교육 방식	기한	비고
신규교육	-점포 경영의 개요 -검수, 메뉴의 조리방법 -종업원 채용, 교육 및 관리 -POS조작 및 접객방법 등	집합교육 이론/실습	개점 전 교육 이수/통과	필수교육
보수교육 (전 점포)	-신메뉴 교육 -친절 교육	집합교육 이론/실습		
보수교육 (클레임발생/ 운영상태미달 점포)	-조리방법 재교육 -친절, 위생 재교육	집합교육 이론/실습	본부 요구 시 즉시	필수교육
현장 교육 /지도비	점포현장 입점/조사 시 유통 기한 경과품 점검/시정조치	가맹점 현장점검/교육	본부 요구 시 즉시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빽다방]**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分	최소 시간	비 용	비 고
신규교육	필수 운영인원	-당사 교육장/점포 <별첨1-1>의 교육비 적용	필수교육 (가맹비등에 포함)
보수교육 (전 점포)	개발되는 과정에 따라 상이	실비부담	
보수교육 (클레임발생/ 운영미달 점포)	클레임의 종류 및 해당과정에 따라 상이	실비부담	필수교육

현장 교육 /지도비	점포현장 입점/조사 시 유통 기한 경과품 발견 시 10~30분	1백만원 (VAT별도)	-점포현장 입점/조사 시, 소비기한(유통기한) 경과품 발견 시에만
---------------	---------------------------------------	--------------	---

3.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은 당사자가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4. 교육훈련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개점 전까지 신규교육을 받고 합격해야 하며, 보수교육(전 점포/클레임대응)에는 반드시 참석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본사는 개점(오픈)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연기 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따라 결정합니다.



백다방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1	서울	신논현역지점	서울 서초구 사평대로 367, 101호
2	제주	호텔더본제주점	제주 서귀포시 색달동 1238번지
3	제주	신서귀포점	제주 서귀포시 신중로 26-8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 년, 개월)

2024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비고
5년 7개월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매출액 산정기준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4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매출액	비고
476,345	당사 직영점의 연간평균매출액은 직영점 POS 및 바로 전 사업연도의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근거로 하여 기재한 것입니다.

<정보공개서 내용문의>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 프랜차이즈사업본부(02-549-3864)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010)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공개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첨 1-1> 면적별 가맹비등 관련 기준 (단위: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즉시 소멸성)

구분	금액
가맹비	해당없음
교육비	3,300
가맹비등 합계	3,300

<별첨 1-2> 면적별 이행보증금 기준 (단위:천원)

구분	금액
이행보증금	1,500

<별첨 1-3> 로열티 금액 관련 기준 (단위: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매월납부, 소멸성)

기준	로열티	비고
매월	275	의월 5일 내 납부

<별첨 1-4> 지역별 공급가액 대비 물류비 상한 기준 (부가가치세 별도)

지역구분	물류비
제주도/ 도서산간지역	택배비 가맹점 별도부담

<별첨 1-5> 가맹점 관점에서의 프랜차이즈의 단점

- 1) "갑"(가맹본부)에게 일정한 대가(로열티 등)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 2) 인테리어, 간판, 메뉴/가격, 영업/서비스 제공방식 등에 있어서,
"갑"의 기준이나 통제를 따라야 한다.
- 3) "갑"의 영업실적의 건실성 정도에 따라 가맹점(가맹점사업자)도 영향을 받는다.
- 4) "을" 점포의 양도나 이전 시 본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별첨 1-6> 별도 공사 및 간판업체 선정시의 자격 요건
- 별도 인테리어 업체 자격 요건

- ① 2년 이상의 시공경력이 있는 업체(직전 사업연도 재무제표, 사업자등록증 제출 필수)
- ② 실내건축공사업면허 보유한 법인업체(면허 사본 제출 필수)
- ③ 공사중의 사고로 점주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산재보험에 가입한 업체
(보험관련 증명서 제출)
- ④ 공사 세부견적서를 사전에 제출.

⑤공사 후 하자보증보험증권 사본 제출 가능한 업체.

※ 위의 5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업체의 경우에 허용한다. 단, 매뉴얼제공비 및 관리감독비 사전 지급 필수.

- 별도 간판 업체 자격 요건

- ①2년 이상의 시공경력이 있는 업체(직전 사업연도 재무제표, 사업자등록증 제출 필수)
- ②옥외광고업 등록 업체(등록증 사본 제출 필수)
- ③공사중의 사고로 점주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산재보험에 가입한 업체
(보험관련 증명서 제출 필수)
- ④직전 사업연도 기준 간판 시공 10회 이상 진행한 업체(증빙자료 제출 필수)

※ 위의 4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업체의 경우에 허용한다. 단, 매뉴얼제공비 및 관리감독비 사전 지급 필수.

<별첨 1-7> CCTV/PTZ 규격, 업체 선정 관련 기준

- ①치하는 모든 카메라 화소수는 최소 200만 화소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②국내산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Made In Korea 제품이어야 한다.
- ③촬영한 자료는 POS System등 다른 장치와 분리하여 구축/관리하여야 한다.
- ④업체는 다음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 전국적인 A/S망을 구축하고 있어야 한다.
 - 업체의 영속성 및 지속적인 연구개발이 가능한 업체여야 한다.
(즉, 연매출 1,000억원 이상의 업체)
 - 대규모집단 계열사가 아닌, 전문업체여야 한다.

※ 위의 4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업체의 경우에 허용한다

<별첨 1-8> 향후 본부POS 구축시의 투자비용 및 관련비용

투자 및 유지 관련 비용		부담 주체	
		가맹본부	가맹점사업자
본부 POS	-본부 POS System 개발비	●	
	-본부 System 구입비	●	
	-본부 System 유지보수 및 운영비	●	
점포 POS	-점포 POS System 구입비/설치비		●
	-점포 POS System 유지/보수비		●
	-본부 POS System과의 통신비		●
	-본부 POS등 수/발주 System의 지급비		●

<별첨 1-9> DS(디지털사이니지) 규격, 업체 선정 관련 외부형(32인치 이상) 기준

- ①모니터의 화면비율은 16:9로 하여야 한다.
- ②모니터의 해상도는 1920X1080(FHD)로 하여야 한다.

- ③ 모니터의 밝기는 2,500cd 이상이어야 한다.
- ④ 모니터의 명암비는 4,000:1이어야 한다.
- ⑤ 모니터의 사이즈는 724 X 393 X 72 mm로 하여야 한다.
- ⑥ 셋탑박스는 솔루션이 구동되는데 문제가 없어야 한다.
(Android OS 버전9, Rooting권한 필수)
- ⑦ 기준평수 내에 내부 모니터는 최소 3대, 외부는 1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단, 구조적으로 설치가 불가한 요소가 있을 경우 가맹본부와의 협의를 통해 스펙 및 설치대수를 설정한다.

※ 위 7가지 조건을 준수하여 해당 품목을 외부 업체로부터 구매 가능
단, 명시된 사양과 일부 차이가 있는 경우 본사 담당자와 협의 후 점포 운영 및 품질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구매 여부를 결정한다.

<별첨 1-9> DS(디지털사이니지) 규격, 업체 선정 관련 내부형(43인치) 기준

- ① 모니터의 화면비율은 16:9로 하여야 한다.
- ② 모니터의 해상도는 3840X2160(4K)로 하여야 한다.
- ③ 모니터의 밝기는 500cd 이상이어야 한다.
- ④ 모니터의 명암비는 4,000:1이어야 한다.
- ⑤ 모니터의 사이즈는 969.5 X 557 X 28.5 mm로 하여야 한다.
- ⑥ 셋탑박스는 솔루션이 구동되는데 문제가 없어야 한다.
(Android OS 버전9, Rooting권한 필수)
- ⑦ 기준평수 내에 내부 모니터는 최소 3개, 외부는 1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단, 구조적으로 설치가 불가한 요소가 있을 경우 가맹본부와의 협의를 통해 스펙 및 설치대수를 설정한다.

※ 위 7가지 조건을 준수하여 해당 품목을 외부 업체로부터 구매 가능
단, 명시된 사양과 일부 차이가 있는 경우 본사 담당자와 협의 후 점포 운영 및 품질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구매 여부를 결정한다.

<별첨 1-10> 가맹본부 및 가맹점 광고/판촉 지출 상세 내역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별첨 2-1> 점포 점검 List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별첨 2-2> 점포 점검 List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백다방

<별첨 3-1>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당사는 홍보물 제작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자체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 품목의 대금 결제는 당일 대금결제로 진행됩니다.

<별첨 3-2>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별첨4-1>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별첨4-2>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백다방